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49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1.

발 의 자:민병덕ㆍ이수진ㆍ한민수

김재원 • 이기헌 • 황명선

김현정 • 이언주 • 권칠승

윤준병·박홍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.

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참고로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 설위탁의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 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 3조의2제9항 및 제30조의2제5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, 준정부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, 지방공단

제30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 항) 중 "제7항까지의"를 "제8항까지의"로 한다.

⑤ 제3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 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 정·개정 및 사용) ① ~ ⑧ (생 략)	제3조의2(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 정·개정 및 사용) ① ~ ⑧ (현 행과 같음)
<신 설>	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은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공기업, 준정부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, 지방공단
제30조의2(과태료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0조의2(과태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3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<u>(5)</u>	\sim	7	(생	략)

8 제1항부터 <u>제7항까지의</u>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

<u>한다.</u>	
<u>⑥</u> ~ <u>⑧</u> (현행 제5항부터 7	भे7
항까지와 같음)	
<u>⑨</u> <u>제8항까지의</u>	